

한국무용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안예슬**·김형남*** 세종대학교·김은혜**** 상명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용저작권 기초 항목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계층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국무용가 20명을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무용 저작권 활용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도출하였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여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 고정화 수단의 요소, 창작성에 따른 요소, 활성화에 따른 요소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범주화된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방안은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플롯의 구체적인 구성,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안무 되어진 일련의 동작, 소품이나 장치), 고정화 수단의 요소(동영상 촬영본, 대본 또는 안무노트, 무보, 모션 캡처 제작본), 창작성의 요소(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창조적 개성, 독자적 작성, 예술적·학술적 가치), 활성화의 요소(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저작권 관련 교육,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신탁단체 도입)로 도출되었다.

주요어 : 한국무용, 저작권, 무용저작권, 의사결정계층기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삼고무, 부채춤 등 우리의 전통춤을 선보였다. 이제는 학교 운동회에서조차 강제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춤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공연함으로써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의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하는 등 우리의 전통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연을 기점으로 무용저작권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 우봉 이매방 선생은 전통춤인 삼고무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의 유족들은 이매방 선생의 춤을 저작권 등록하고 사위가 경영하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우봉이매방춤보존위원회에서는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청와대, 2018)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김희권, 이우라, 2019).

* 이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4241)

** 세종대학교 무용과 박사

*** 세종대학교 무용과 부교수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연구전임교수, eunhyekim125@gmail.com

이처럼 전통춤 저작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전통춤은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춤이므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무용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아무리 전통춤이라 해도 안무자가 그것을 변형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 그 춤의 일부라도 따라할 시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하병현, 2019).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를 연구한 박성호(2008)는 법률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예술 분야에서도 창작물 이용에 있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춤의 기준틀을 저작권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무용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인류문화의 최초 표현양식으로서의 ‘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 중 최후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장르이다.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은 ‘춤’은 소설, 그림, 영화, 연극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고,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않았다(최정환, 2007). 무용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하지 3세기가 넘도록 인정되지 못하였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기체계(무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피에에 기보법(Beauchamp-Feuillet notation)이나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 같이 체계적인 무보가 존재하긴 했으나 대본과 악보처럼 절대다수가 용이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상용화된 무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3차원의 시공간적인 예술을 2차원의 지면에 포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심정민, 2019).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 성질의 권리이며(서재권, 2009), 무용저작권은 저작자(안무가)가 만들어낸 저작물(안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개인의 창조성과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장려하는 예술관을 반영한다(박성호, 2019). 즉, 저작권 제도란 특정의 저작물에 대해 개인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점권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문화에 관하여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

한편 유럽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안무가의 안무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무용 예술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보호할 만큼 예술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무용수나 안무가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미미할 뿐더러 라이선스 계약, 즉 사적 자치에 맡겨두기에는 예술가들의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예술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정기령, 2014). 또한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유형물은 일정 부분 창작자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무용 안무와 표현 기법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현재까지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신하라, 2017). 음악, 미술 등 타 분야와 달리 무용 분야의 저작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작물 고정성에 있어 비교적 자유도가 높아 영상물, 사진, 안무노트 등 선택지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물론 무용에도 라바노테이션과 같은 무보 체계가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른다. 이와 같이 무용 분야는 저작물 고정성에 있어 고정화 수단이 통일 혹은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의 접근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 통일된 기준 없이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것 역시 새로운 창작을 가로막아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무용저작권의 현황에 관한 연구(정기령, 2014; 정주이, 2008), 무용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김윤희, 2008; 김희권, 2015; 신민서, 2017; 신성아, 2015; 이루라, 2015; 홍미성, 2016; Li, M., Miao, Z., & Ma, C., 2019; Abitabile, K., & Picerno, J., 2004; Cook, M., 1976), 무용저작권의 사례에 관한 연구(김정분, 2010; 김희권, 이루라, 2019; 김희권, 이루라, 2014; 황희정, 2013;

Fishkin, W. J., 2001), 무용저작권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백민경, 2005; 이서은, 2015; 이천희, 조난경, 2003; 정재윤, 2019; 조난경, 2003; 조상혁, 2015; Vaidya, O. S., & Kumar, S., 2006)로 네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무용저작권의 보호와 인식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무용저작권이 타 분야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용저작권 인식의 보편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무용저작권의 현주소를 알리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논의들은 부재했다. 이에 한국무용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종합적인 평가와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계층기법(AHP)을 실시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수정·보완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쟁점에 대한 방안을 정리함으로써 무용가의 창조성 보호 및 무용의 보급 사이의 균형점을 위하여, 이들 가치 간의 충돌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무용저작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을 이끌어낸다.

둘째,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을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산출한다.

셋째,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정책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패널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에 의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S대학, I대학 소속의 저작권 전공 교수 2명, 법무법인 C, D 소속의 저작권 전문변호사 2명, 저작권위원회 소속의 저작권 법률상담관 2명 총 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견해를 수렴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패널의 특성

| 순 | 이름 | 직급 | 소속 |
|---|-----|---------------|--------|
| 1 | C00 | 교수 | S대학 |
| 2 | H00 | 교수, 저작권위원회 위원 | I대학 |
| 3 | L00 | 변호사 | 법무법인C |
| 4 | K00 | 변호사 | 법무법인D |
| 5 | R00 | 법률상담관 | 저작권위원회 |
| 6 | K00 | 법률상담관 | 저작권위원회 |

무용저작권에 관한 기초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방법인 Saaty(1982)의 의사결정계층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이상이며 15년 이상의 무용 경력에 있는 한국무용가 20명을 대상으로 무용저작권 개선방안에 대한 쌍대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이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항목의 요소 간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서면을 통해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특성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여성 | 19 | 95 |
| | 남성 | 1 | 5 |
| 연령 | 30대 | 13 | 65 |
| | 40대 | 4 | 20 |
| | 50대 | 3 | 15 |
| 학력 | 대학교 졸업 | 0 | 0 |
| | 대학원 재학 | 1 | 5 |
| | 석사 학위 | 0 | 0 |
| | 박사 학위 | 19 | 95 |
| 경력 | 10년 이상 | 0 | 0 |
| | 15년 이상 | 3 | 15 |
| | 20년 이상 | 6 | 30 |
| | 25년 이상 | 11 | 55 |
| 문화재 이수 유무 | 이수 | 7 | 35 |
| | 미이수 | 13 | 65 |
| 합계 | | 20 | 100 |

2.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첫째, 저작권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무용저작권의 기초 항목 설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 2007). 이러한 델파이 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고안된 조사방법의 일종이며,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는 방법으로써 그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명성이 높은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반대 의견은 물론 사회적 체면이나 친분 관계 등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설문을 반복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하게 하여, 자신의 응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이는 대면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의를 위한 합의나 논쟁의 방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델파이 기법의 본래 목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안진성, 2011). 이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총 두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는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27일에 문헌연구와 면담을 토대로 무용저작권 성립요건 기준과 방안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2차 조사는 2019년 6월 14일, 2019년 10월 18일에 1차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e-mail로 내용을 추가하여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와 고정화 수단 등 그 외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무용저작물 보호범위 요소, 고정화 수단 요소, 창작성 요소, 활성화 요소 등의 문항이 구성되었고 범주화 과정을 거쳐 4개 영역의 상위 중요도 요인 및 16개의 하위 중요도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으로 문항을 제작한 후, 저작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제작 문항

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범주화된 기초 항목에 대하여 의사결정계층기법(AHP)을 적용하여 쌍대 비교(Paired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의사결정계층기법(AHP)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핵심 요인들로 도출하고 계층화하여 쌍대 비교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응답자 각각의 판단에 있어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관성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요소 간의 우선순위 중요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혜, 김지영, 권재윤, 2018). AHP 분석은 설문 응답의 일관성이 중요하기에,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의 값이 낮을 경우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0.1 보다 작을 경우 응답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지영, 김지영, 2019). 이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이상이며 15년 이상의 무용 경력에 있는 한국무용가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0일, 2019년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무용저작권에 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방문 또는 e-mail을 통해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넷째,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계층구조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MS Office Excel 2016 및 Expert Choice 1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계층기법(AHP)의 일관성 검증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표. 3 연구의 절차

| | |
|--------|---|
| 델파이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문헌연구 및 면담을 토대로 문항 구성 ▪ 2차: 1차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그 외의 요인 도출 |
| 문항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문항 제작 및 적절성 평가 |
| AHP 설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또는 e-mail을 통한 AHP 설문 실시 |
| AHP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산출 및 분석 ▪ 계층구조도 모형 제시 |

III. 연구 결과

1.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 도출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도출한 결과, 4개 영역의 상위 중요도 요인 및 16개의 하위 중요도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인에 대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오승종(2012)은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캣츠(Cats)’를 예로 들며 무대장치도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세부적 표현 또는 소도구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로 볼 수 있으며, 연극저작물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성욱(2009) 또한 무대장치는 디자인과 관련한 원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일련의 동작만으로는 안무의 독창성을 성립시키지 못하며, 동작뿐만 아니라 플롯의 구성 또는 특정 장면 등이 보호범위의 요인으로서 작용되어야 한다. 소품이나 장치는 별도의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무용 작품을 다른 장르의 예술이 합쳐져 여러 창작자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인 도출을 위하여 안무되어진 일련의 동작,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소품이나 장치 등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정화 수단의 요인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용가들을

대상으로 작품 창작 시에 무보를 작성하는지, 무보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무보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이 대다수였다. 또한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고정화가 요건이 아니더라도 관련 분쟁 시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고정화 수단들이 분쟁 예방과 해결, 무용저작물 보호 강화에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무용저작물 고정화 수단의 요인으로 무보, 대본 또는 안무노트, 동영상 촬영본, 모션 캡처 제작본 등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창작성에 따른 요인에 대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이해완(2015)은 '창작성'에 대하여 '창작성=독자적 작성'이라는 관점과 '창작성=독자적 작성+창조적 개성'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오승중(2013)은 '창작성=독자적 작성+창조적 개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성'에 대하여 수준 높은 예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하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하며, 결국 예술인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무용저작권 성립요건 중 창작성에 해당하는 요소를 독자적 작성, 창조적 개성,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예술적·학술적 가치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활성화에 따른 요인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무용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표피적이기 때문에 우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정재운, 2019; 정기령, 2014)뿐 아니라 전통춤 계승에 있어 획일적인 방식의 도제교육이 아닌 인지적 도제 기반의 보완된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김지영, 윤정옥, 2019)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에 따라 무용저작물 활성화의 요인으로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저작권 관련 교육, 신탁단체 도입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된 상위 요인 및 하위 요인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

| 상위 요인 | 무용저작물 보호범위 | 고정화 수단 | 창작성 | 활성화 |
|----------|------------------|------------|---------------------|-------------------|
| 하위 요인 |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 | 동영상 촬영본 |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
| |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 대본 또는 안무노트 | 창조적 개성 | 저작권 관련 교육 |
| | 안무되어진 일련의 동작 | 무보 | 독자적 작성 |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
| | 소품이나 장치 | 모션 캡처 제작본 | 예술적·학술적 가치 | 신탁단체 도입 |

2.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위 요인 분석

1)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하위 요인 중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에 대한 AHP 분석 결과의 일관성 지수는 .017로 나타났으며,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이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무용저작물 보호범위 하위 요소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416),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284), 안무되어진 일련의 동작(.226), 소품이나 장치(.0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하위 요소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무용저작권 보호범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하위 요소 | 상대적 중요도 | 순위 |
|------------------|---------|----|
|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 | .416 | 1 |
|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 .284 | 2 |
| 안무되어진 일련의 동작 | .226 | 3 |
| 소품이나 장치 | .074 | 4 |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 .017

2) 고정화 수단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하위 요소 중 고정화 수단에 대한 AHP 분석 결과의 일관성 지수는 .007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촬영본이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고정화 수단 하위 요소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동영상 촬영본(.504), 대본 또는 안무노트(.203), 무보(.164), 모션 캡처 제작본(.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화 수단의 우선순위에서는 동영상 촬영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고정화 수단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고정화 수단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하위 요소 | 상대적 중요도 | 순위 |
|------------|---------|----|
| 동영상 촬영본 | .504 | 1 |
| 대본 또는 안무노트 | .203 | 2 |
| 무보 | .164 | 3 |
| 모션 캡처 제작본 | .129 | 4 |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 .007

3) 창작성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하위 요소 중 창작성에 대한 AHP 분석 결과의 일관성 지수는 .002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이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창작성 하위 요소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482), 창조적 개성(.217), 독자적 작성(.189), 예술적·학술적 가치(.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창작성의 우선순위에서는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창작성 하위 요소에 대한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창작성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하위 요소 | 상대적 중요도 | 순위 |
|---------------------|---------|----|
|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 .482 | 1 |
| 창조적 개성 | .217 | 2 |
| 독자적 작성 | .189 | 3 |
| 예술적·학술적 가치 | .112 | 4 |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 .002

4) 활성화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하위 요소 중 활성화에 대한 AHP 분석 결과의 일관성 지수는 .025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활성화 하위 요소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334), 저작권 관련 교육(.323),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257), 신탁단체 도입(.0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활성화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하위 요소 | 상대적 중요도 | 순위 |
|-------------------|---------|----|
|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 .334 | 1 |
| 저작권 관련 교육 | .323 | 2 |
|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 .257 | 3 |
| 신탁단체 도입 | .087 | 4 |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 .025

IV. 논의 및 개선방안

이 연구는 무용저작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무용가의 창조성 보호 및 무용의 보급 사이의 균형점을 위하여 이들 가치 간의 충돌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무용저작권 관련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밝히고,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 요인을 도출하고자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박사학위 이상의 한국무용가 20명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의사결정계층기법(AHP)을 진행하였다.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 및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고정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연구한 심정민(2019) 또한 무용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보나 영상으로 ‘고정화’하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 미술 등 타 분야와 달리 무용 분야의 저작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작물 고정화에 있어 비교적 자유도가 높아 영상물, 사진, 안무노트 등 선택지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물론 무용에도 라바노테이션과 같은 무보 체계가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른다. 이와 같이 무보 작성으로 무용저작물을 고정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따른다.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 또한 저작자마다 기록 시기, 구도(방향) 또는 분량 등 형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 기점 이후로는 저작물을 등록할 시에 ‘반드시 창작된 순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또는 ‘정면, 사선 방향에서의 기록이어야 한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고정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정화 수단이 통일 혹은 체계화되어야 접근성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높아져야 권리로서 보호할만한 실질적 이익이 생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발전된 기술의 고정화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무보나 영상 등으로 고정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해 무보나 영상 등의 방법으로 무용저작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심정민, 2019). Li, M., Miao, Z., & Ma, C.(2019)는 실제 공연에서 얻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바노테이션 점수를 생성하여 포착된 데이터의 동작 패턴, 다양한 구성 등 새로운 특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라바노테이션과 같은 고전적 무보 체계가 현대 기술과 접목하면서 모션 캡처 등으로 발전하여 동작 패턴을 기억하고 일치성을 분리하는 기술로 진화한 것과 같이, 시대에 맞는 고정화 수단이 상용화된다면 저작자의 저작물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5G에서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논문에서의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 있듯이, 객체의 동작을 원하는 속도와 각도로 특정 구간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AR기술을 고정화 수단에 활용한다면 동작과 동작의 연결구간 유사도를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무용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어떠한 방법도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황희정, 2013), 이

리한 방법은 저작권 침해의 세 가지 요소인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 중 실질적 유사성을 검증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정화 수단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동영상 기록뿐 아니라 공연 아카이빙, 공공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공공 플랫폼을 두는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용큐레이션의 개념화를 연구한 김지영, 한석진(2017)에 따르면 2009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또 다른 현대예술: 춤과 연극(Another Modern Art: Dance and Theater)> 전시의 내용은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등 1940년대 무용가들의 작품과 활동을 담은 전시였다고 한다. 이는 미술관의 일부로서 무용연구를 위한 리서치 컬렉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된 초기 무용 아카이브의 자료(물품, 출판물, 사진, 슬라이드, 필름과 단행본 등)가 담당 사서의 부서 이동으로 인해 뉴욕 공연예술 공공도서관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전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존하는 이러한 방법은 국내의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시스템을 제공하는 문화재청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카이브를 통해 보존되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들이 향후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동작의 일치도를 구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작권에 대한 무용계에서의 건강한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용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춤의 저작권 가치인식을 논한 정재운(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작권법 교육을 통해 무용가(안무가)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용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표피적이기 때문에 우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교육은 대학 교육 또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여 대안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통춤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도제식 교육 방법의 쇄신이 있어야 한다. 전통춤을 전승하는데 있어서 시시비비 보다는 온전한 전승과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교육을 위한 인지적 도제 기반의 학습설계를 연구한 김지영, 윤정옥(2019)은 전통춤 계승에 있어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식의 도제교육이 아닌 교수학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교육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물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전승을 위하여 도제식 교육의 필요성은 요구되어지나 앞으로의 창조적 계승에 있어서는 전통식 도제 교육에서 벗어나 인지적 도제 기반의 보완된 교육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언점을 시사해볼 수 있었다. 무용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환경의 요청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전통춤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자구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용계 안에서 내부적 차원의 교육 방식에 대한 교육학적 모색 또는 자생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전문 사서 혹은 전문 학예 연구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인력 또한 시급하게 요청된다. 김지영, 한석진(2017)은 전시 분야에 구축된 학예사 제도와 같이,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무용큐레이션의 전문 교육 체계와 전문 인력 제도의 정립을 위한 행보가 이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주로 미술 분야에서 운용되었던 큐레이터 영역이 무용 분야에 도입된다면, 대중들의 무용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도울 뿐 아니라 무용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계에서의 신탁관리단체 도입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가 따른다. 신탁관리단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앞서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 타 분야 사례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실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음악저작권의 경우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사진의 경우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KPCMA), 어문의 경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 등이 있다. 저작권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KOBPRA) 등이 있다(황태희, 2016). 이들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완(2010)은 '신탁'이란 해당 권리를 완전히 신탁단체에게 이전함을 뜻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신탁의 방법을 취할 경우 수탁자(신탁단체)는 편리하지만, 권리자(안무가)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현재 무용계가 신탁관리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의 규모인지 도입에 따르는 경제적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김종현(2012)은 무용계가 무용저작권 혹은 무용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만큼 공연현장의 규모나 수익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김윤희(2008) 또한 무용저작물은 타 장르에 비하여 수요가 적고 무용계 시장의 범위 또한 좁으므로 신탁관리단체 도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저작물의 재이용 건이 높을수록 신탁관리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무용저작물은 일회성 공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안무가)의 손실은 줄어들 무용 시장 규모에 적합한 관리단체를 대체할 방안으로 위원회 또는 협회 차원의 기구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최해리(2009)는 무용저작권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전문 단체의 설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예술 관련 저작권협회를 연계·통합시켜 프랑스의 SACD(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극작가·극음악 작곡가 협회), 독일의 VG Bildkunst(이미지 예술을 위한 협회)와 같은 예술저작권협회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였다. 임명주(2014)도 신탁관리단체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협회 차원에서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관리단체의 도입과 같은 대안 보다는 무용 시장 규모에 맞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시작이 현실적인 도약점이 될 것이다. 다만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을 도출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범주화 과정을 거쳐 4개 영역의 상위 중요도 요인 및 16개의 하위 중요도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을 도출하고, 둘째,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을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산출하여, 셋째,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은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 고정화 수단의 요소, 창작성의 요소, 활성화의 요소로서 4개 영역의 상위 중요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한국무용 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요소 중 각 우선순위는 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 동영상 촬영본, 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로 도출되었다. 셋째, 최종적으로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방안으로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플롯(줄거리)의 구체적인 구성,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안무되어진 일련의 동작, 소품이나 장치), 고정화 수단의 요소(동영상 촬영본, 대본 또는 안무노트, 무보, 모션 캡처 제작본), 창작성의 요소(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창조적 개성, 독자적 작성, 예술적·학술적 가치), 활성화의 요소(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저작권 관련 교육,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신탁단체 도입)로 구성되었으며,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계층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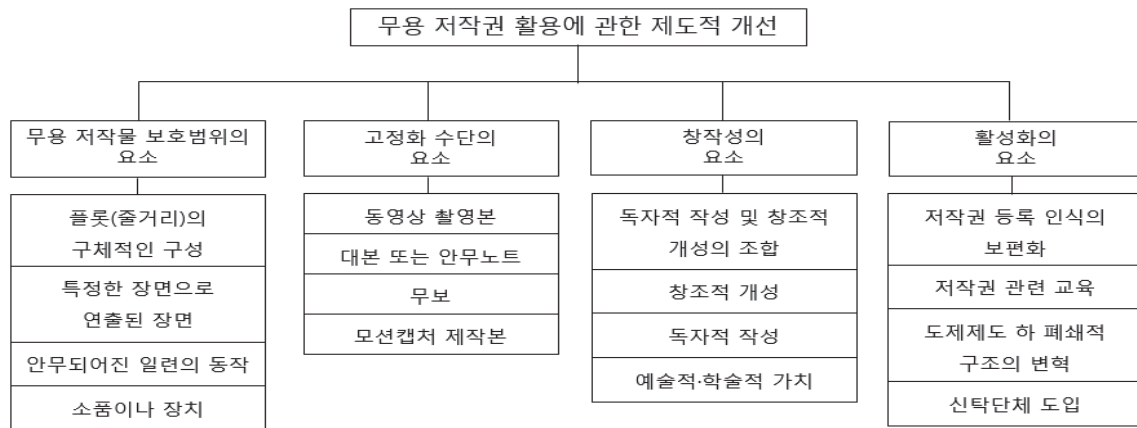


그림 1.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

이 연구는 델파이 조사에서 법적 장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 전문가 기준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요인이 추출 되었지만 무용가들은 이들 요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더 개방적으로 무용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미(2010). 무용참여 확대를 위한 무용 사회화 연구의 방법과 방향. *한국무용과학회*, 21, 1-18.

김영주 의원실(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 대한민국 국회. 서울.

김윤희(2008). 한국의 무용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은혜, 김지영, 권재윤(2018). 의사결정계층(AHP)분석을 활용한 학교무용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715-729.

김종현(2012). 공연계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서울.

김지영, 윤정옥(2019).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교육을 위한 인지적도제 기반의 보편적 학습설계(UDL). *한국무용학회*, 19(2), 62-71.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 AHP분석을 활용한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 직업지도, 진로교육 및 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55(6), 666.

김지영, 한석진(2017). 무용큐레이션(Dance Curation)의 개념화 연구: 무용기획 전문화와 대중화를 향한 창의적 시선. *한국체육학회*, 56(2), 493-505.

김희권, 이루라(2019).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에서 촉발된 전통춤의 무용저작권 인정 논의와 저작권법의 목적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77(1), 32.

남정미, 유소이(2014).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한 무용공연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전망 분석. *한국무용과학회*, 31(1), 85-98.

박성호(2019).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엘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 *계간저작권*, 126, 30.

서재권(2009).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16, 57.

손승혜(2011).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한류정책 이해와 평가. *문화정책논총*, 25(1), 39-50.

심정민(2019).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54, 20-23.

- 안진성(2011).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오승중(2016).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 오승중, 이해완(2004).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 이연수, 정한결(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 **26**, 17-34.
- 이지영, 김지영(2019). 균형성과표(BSC)를 활용한 댄스퍼트니스 비즈니스의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4**(2), 5.
- 이철남(2019). 전통문화에 대한 저작권 규범체계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54**, 57-77.
- 이해완(2010).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법조, **59**(4), 643.
- 이해완(2015).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 이호신(2019).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무용역사기록학회, **54**, 31-56.
- 임명주(2014). 무용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문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4), 225-251.
- 정기명(2014). 무용저작권에 대한 고찰: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영미(2011).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 최성옥(2009). 무용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28**(28), 139-166.
- 최정환(2007). 무용저작권의 보호. 변호사, **37**, 148.
- 최해리(2012). 무용저작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 하병현(2019). 전통창작춤과 저작권. 예술부산, **163**, 27.
- 황태희(2016).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남용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아주법학, **9**(4), 190.
- 황희정(2013).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우리춤과학기술, **9**(1), 107.
- Abitabile, K., & Picerno, J. (2004). *Dance and the Choreographer's Dilemma: A Legal and Cultural Perspective on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ic Works*, Campbell L. Rev.
- Cook, M. (1976). *Moving to a new beat: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ic works*, UCLA L. Rev.
- Fishkin, W. J. (2001). *Next on Floor Exercise, Dominique Dawes: The Difficulties In Copyrighting Athletic Routines*, Sport L.
- Li, M., Miao, Z., & Ma, C. (2019). *Dance Movement Learning for Labanotation Generation Based on Motion-Captured Data*, IEEE Access.
- Petri, G.(2010). *Transition from guild regulation to modern copyright law* (Sweden), Global Copyright.
- Saa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 Saaty, T. L. (1994).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faces.
- Saaty, T. L. (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Sciences*.
- 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 (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 Vaidya, O. S., & Kumar, S. (2006).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 overview of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the Korean Dance Copyright System*

Yeaseul An** · Hyoungham Kim*** Sejong University · Eunhye Kim****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copyright in Korean dance. Delphi research was conducted on six copyright law experts. In order to establish the measurement items for dance copyright,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for 20 Korean dancers with more than a Ph. D. than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expert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the use of copyright in Korean dance was drawn. Second, the priority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categorized dance copyright were derived. As a result, elements of protection range of dance works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lot), elements of fixed means (video clip), elements of creativity (combination of self-creating and creative personality) and element of activation (universaliz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recognition) were derived as a metho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the use of dance copyrigh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to improve the conflict between these values in order to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dancer's creativity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dance.

Key words : Korean Dance, Copyright, Dance Copyright, AHP

논문투고일: 2020.08.31

논문심사일: 2020.09.25

심사완료일: 2020.10.1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8104241)

** Ph.d,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College of Global Research Institute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